

公正去來法에 의한 카르텔規制 内容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I. 共同行爲內容

1. 共同行爲의 定義

- 共同行爲란 ①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② 契約·協定·決議·其他 다른 方法을 통하여 ③ 價格의 決定·維持 또는 變更行爲 등 法第11條 第1項 各號의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함(法第11條 第1項)

가. 主 体

- 共同行爲의 主体는 2以上의 事業者임
- 事業者
 - 製造業,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倉庫業을 營爲하는者(法第2條 第1項)
 - 飲食 및 宿泊業, 通信業, 電氣·ガス 및 水道事業, 金融·保險業, 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을 營爲하는者(令第2條 第1項)
- * 各事業의 分類는 韓國標準產業 分類에 따름(令第2條 第2項)

나. 行爲

- 어떤 經濟的 利益의 供給에 대하여 그것에 對應하는 經濟的 利益의 反對給付를 받는 行爲를 反複·繼續하여 行하는 것.
- 事業에 該當되지 않는 行爲

例 { 1回만의 行爲
一方의인 經濟的利益의 供給

- 事業을 營爲한다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事業을 行하는 것을 意味하는데, 이 경우 事業者의 主事業은 물론이며 主事業이 아닌 附隨事業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면 그 附隨事業은 對象事業이 됨.
-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宗教, 學術, 研究, 調查, 社會事業을 行하는 者는 事業者가 아님.

나. 意 思

- 共同行爲에서 共同行爲의 實現을 위한 共同의 意思가 必要함.
 - 共同의 意思는 完全한 合意는 勿論 合意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意思의 連結이 있으면 足함.
- 共同의 意思의 表現方法은 “契約, 協定, 決議, 其他 어떠한 方法”이며 其他 어떠한 方法이란 合意, 諒解등 積極的인 共同의 意思는 勿論 暗默의 諒解등 消極的인 共同의 意思도 包含함.
- 明示的 共同行爲
 - 決議, 協定, 契約등 明示的 意思의 存在
 - 合意, 諒解등 積極的인 意思의 存在
- 默示的 共同行爲

- 暗默의 諒解등 消極的인 意思
- 行爲의 結果가 外形上 一致할 때는 共同의 意思가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 (法第11條 第3項)

다. 行爲

- 共同行爲는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다음의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함.
 - (1) 價格을 決定 · 維持 또는 變更하는 行爲
 - 價格은 本來 事業者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通해서 形成해야하는 것인데 事業者間에 또는 事業者團體가 關與하여 價格을 決定, 維持하고 變更하는 것은公正하고自由로운 市場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것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最低販賣價格의 設定 및 價格引上幅을 設定
 - 共通의인 價格算定方式의 設定으로 價格 을 決定
 - 標準價格, 基準價格, 目標價格을 設定
 - 割引限度額 등을 설정
 - 價格을 團體交涉에 의해 決定
 - 廉賣業者排除 및廉價品의 還買
 - 將來의 價格에 대한 情報活動
 - (2) 商品의 販賣條件 또는 用役의 提供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定하는 行爲
 - 商品의 販賣條件이나 用役의 提供條件은 事業者의 固有한 事業活動分野인데 이에 대해 制限을 가하는 것은自由로운 市場競爭 狀態에 영향을 미치는 行爲이며 販賣代金이나 代價의 支給條件은 價格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이러한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定하는 것은 市場價格에 대한 制限이 되어 自由롭고公正한 市場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것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共通의인 代金支給方法의 設定
 - 再販條件의 設定
 - 共通의인 商品引渡條件의 設定
 - (3) 商品의 生產, 出庫 또는 販賣의 制限이나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生產 · 販賣등의 數量을 制限하는 것은 市場의 需給關係에 影響을 주고

價格維持 및 引上의 效果를 가져오게 되며, 事業者의 經營合理化에 의한 費用節減效果를 制約하고 事業者의 競爭手段을 制限하게 되어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에 影響을 끼치게 됨.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行爲도 마찬가지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生產 · 販賣등의 數量을 共同으로 決定하는 것
- 原材料의 購入制限등에 의한 數量制限
- 數量限度를 示唆하는 基準設定에 依한 數量調節
- 需給調整을 目的으로 하는 作爲의in 需要豫測 및 短期需要豫測에 依한 供給計劃 交換
-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去來相對方의 制限, 去來地域의 制限, 受注의 配分, 受注豫定者의 決定을 行하는등 去來地域 및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는 事業者의 販賣競爭을 制限하고 需要者의 選擇權을 侵害함으로서 市場의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結果的으로 價格 및 需給狀況에 影響을 미치게 됨.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去來相對方의 制限
 - 去來地域의 制限
 - 受注의 配分, 受注豫定者의 決定
 - 入札등에의 參加制限
 - 블랙 · 리스트(Black List)등의 作成
 - (5) 生產 또는 用役의 提供을 為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制限하는 行爲
 -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 등에 관한 制限이 事業者의 生產活動 및 事業活動을 制約함으로써 事業者의 競爭手段을 制限할 때 結果的으로 市場의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沮害하게 됨.
 - 그러나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制限하는 事項이 公害의 防止나 危險의 防止 등 公益的 基準을 設定하는 것일 때

는 그러한目的의範圍內에서制限이認定될수있음.

-共同行爲에該當되는行爲例

○設備의新·增設의制限,共同廢棄

○設備投資를制限하기위한情報活動

(6)商品의生產 또는販賣時에그商品의種類 또는規格을制限하는行爲

-商品의規格,種類를制限하는行爲는製品競爭을制限함

○市場에서의競爭에影響을미쳐需要者の選擇權을제한

○企業競爭力強化와消費者保護側面에서볼때製品의多樣화와新製品開發에影響

-다만,生產能率의向上,流通의合理化,부품의互換性增大,粗惡品排除등을위한標準化事業活動으로서需要者の利益을害하지않을때는受當性이認定될수있음

-共同行爲에該當되는行爲例

○規格制限(價格制限의補完行爲,競爭手段制限,需要者利益沮害)

(7)營業의主要部門을共同으로遂行하거나管理하기위한會社를設立하는行爲

(8) 다른事業者の事業內容 또는活動을制限하는行爲

*어떤行爲가直接위類型에該當하지않더라도위類型의行爲에結果的으로影響을미치거나위類型의行爲實現을目的으로하는경우에는共同行爲로看做함(改正追加)

2. 不當한共同行爲의成立

-共同行爲중에서“一定한去來分野의競爭을實質적으로制限하는行爲”는不當한共同行爲임

-不當한共同行爲는所定節次·要求에따라經濟企劃院長官의認可를받지않으면行할수없으며認可받지않고不當한共同行爲의遂行을約定하는경우該當契約등은事業者間に있어서無效가됨.

가.一定한去來分野

-一定한去來分野는去來의客體別로競爭關係가成立되는지與否에따라判斷하고그範

圍의制限이必要한경우는去來段階別또는去來地域別로區分하여判斷함.

-去來客體別競爭關係의成立은同種또는類似한商品 또는用役인지의與否에따르며同種또는類似한商品 또는用役이란

○一般的인商品分類에서同種으로分類되거나

○當該商品의機能및效用의類似性이있거나

○當該商品의生產工程의類似性이있거나○去來相對方의特性上同種또는類似한것으로通常認定되는것임.

-去來段階別競爭關係의成立은商品의去來가特定去來段階에만關聯되는경우에는生產,都賣,小賣또는特殊한段階로區分함.

○當該事業者の活動이生產業,都賣業,小賣業어디에屬하는가의判斷은社會通念에따라서當該事業者の通常의事業活動이基準이됨.

-去來地域別競爭關係의成立은需要層의地域範圍,競爭制限行爲參加者的地域範圍,對象商品의移動性등을考慮하여地域範圍를區分함.

○一部極히限定된地域 및通常事業活動의範圍를벗어난地域에서는競爭의實質的制限이成立되지않음.

나. 競爭의實質的制度

-競爭狀態의實現은競爭關係에있는事業者間に있어서個個의事業者들이서로他事業者를배척하고去來相對方과去來하려는競爭機能이確保되고그것이發揮되고있는狀態를意味함.

-競爭의實質的制限이란一定한去來分野의競爭狀態가減少하여特定事業者또는事業者團體가그意思로어느程度自由로이價格,數量,品質및기타條件을left함으로써市場을支配할수있는狀態를의미함.

-一定한去來分野의市場에實質的市場支配力形成은當該業種의生產構造,市場構造,競爭狀態등을考慮하여個別의으로判別함.

- 市場支配力を 形成하지 못하는 少數의 事業者 의 行爲는 競争을 實質적으로 制限한다고 볼 수 없음.

3. 法的用이 除外되는 共同行爲

가.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

-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法律 또는 그 法律에 依한 命令에 따라 行하는 正當行爲”에 대해서는 法適用이 제외되므로 共同行爲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47條)
- 特別한 法律에 競争制限에 관한 明文 規定이 있어야 함.
- 根據規定이 包括的이고 暖昧한 경우에는 特別法의 目的에 따라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與否를 判斷하며 競争制限行爲가 必要不可缺한 事由가 立證되어야 함.
- 根據規定이 包括的이고 애매하며 競争制限行爲가 特別法의 目的에 비추어 必要不可缺하지 않을 경우는 適用除外가 되지 않음.

나. 無体財產權의 行使行爲

- “著作權法,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의한 權利의 行使라고 認定되는 行爲”에 대해서 法適用이 除外되므로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48條)

다. 一定한 組合의 行爲

-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 設立된 一定한 組合의 行爲에 대해서는 法適用이 除外되므로 그러한 組合의 事業者團體禁止規定의 競争制限行爲를 하더라도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

－ 一定한 組合의 要件

- (a)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的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 (b)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 (c) 各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 (d)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分配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定하여져 있을 것.

- 例 外

-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도록 하거나 一定한去

來分野의 競争을 “實質적으로 制限함으로써 不當하게 價格을 引上하는 경우에는違反事件이 成立함.

○價格引上의 不當性與否의 判斷은 價格引上이 必要不可缺한 事由가 立證되지 않으면 不當한 價格引上이 됨.

라. 認可받은 共同行爲

- 一定한 去來分野의 利益을 實質적으로 制限하게 된다하더라도 許可를 받은 共同行爲는 違法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11條 但書)
- 許可를 받을 수 있는 共同行爲의 類型 및 要件(法第11條 第1項 但書, 施行令 第19條내지 第19條의 6)
- 共同行爲를 하려는 者는 共同行爲 認可要件에 該當되는 것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하여 認可申請을 하며, 認可申請된 共同行爲에 대해서는 公示등의 節次를 거쳐 認可與否가 決定됨(施行令 第17條내지 第17條의 2)
- 事業者가 認可된 共同行爲의 實施狀況을 每6月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報告를 하여야 하며(施行令 第18條) 認可된 共同行爲의 程度를 넘어서 또는 認可內容을違反할 때는 그 部分은違反事件이 成立함.

마. 行政處分·行政指導에 依한 競争制限 行爲

- 行政官廳의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에 依하여 事業者間에 行해지는 共同行爲에 대해서도 原則으로는違反事件으로 成立함.
- 競争을 制限하는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는 經濟企劃院長官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함(法第51條). 事前協議를 거친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는違反事件으로 成立되지 않음.
-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에 의한 共同行爲가 事前協議를 거치지 않을 경우 原則으로는違反事件이 成立하나 事業者の 共同意思에 의한 共同行爲가 아니라는 점에서 具體的인 경우에 個別의으로違反事件 成立與否 및 處理를 判斷함.

III. 事業者團體의 競争制限行爲

1. 競争制限行爲의 定義

共同行爲의 類型(目的)	積 極 的 認 可 要 件	消 極 的 認 可 要 件
① 產業合理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同行爲에 의한 技術向上, 品質改善, 原價節減 및 能率增進등의 效果가 明白한 경우 ○共同行爲 以外의 方法으로는 產業合理화의 達成이 困難한 경우 ○競爭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 產業合理화의 效果가 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當該 共同行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程度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需要者 및 關聯事業者的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할 憂慮가 없을 것 ○當該 共同行爲 參加事業者間에 共同行爲의 内容에 不當한 差別이 없을 것.
② 不況克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特定한 商品 또는 用役의 需要가相當期間 계속하여 減少하고 需要에 比하여 供給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狀態가 계속될 것이明白한 경우 ○當該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格이相當期間 平均 生產費를 下廻하고 있는 경우 ○當該 事業分野의相當數의企業이 不況으로 事業活動을 계속하기가 困難하게 될 憂慮가 있는 경우 ○企業의合理화에 의하여는 上記事項을 克服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當該 共同行爲에 參加하거나 脫退하는 것을 不當하게 制限하지 않을 것.
③ 產業構造의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內의 經濟與件의 變化로 特定 產業의 供給能力이 顯著하게 過剩狀態에 있거나, 生產施設·生產方法의 落後로 因하여 生產 能率이나 國際競爭力이 顯著하게 低下되어 있는 경우 ○企業의合理화에 의하여는 上記事項을 克服할 수 없을 경우 ○競爭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 產業構造를 調整하는 效果가 클 경우 	
④ 中小企業의 競爭力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同行爲에 의한 中小企業의 品質, 技術向上等 生產性 向上이나 去來條件에 관한 交渉力 強化가明白한 경우 ○參加事業者 모두가 中小企業者인 경우 	

共同行爲의 類型(目的)	積 極 的 認 可 要 件	消 極 的 認 可 要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同行爲外의 方法으로는 大企業과의 效率的인 競争이나 大企業에 對抗하기 어려운 경우 	
⑤去來條件의 合理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去來條件의 合理化로 生產能率의 向上, 去來의 圓滑化 및 消費者의 便益增進에 明白하게 寄與하는 경우 ○去來條件의 合理化 内容이 當該事業分野의 事業者들에 의하여 技術的・經濟的으로 可能한 경우 ○競爭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去來條件의 合理화의 效果가 클 경우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는 “共同行爲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事業者數의 制限, 構成事業者의 活動의 不當한 制限, 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再販賣價格維持行爲 등”의 禁止行爲를 事業者團體가 行함으로써 一定去來分野에 있어서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를 制限하는 것이 該當됨(法第18條 第1項)

가. 主 体

- 事業者團體가 競爭制限行爲의 主体임
- 事業者團體는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2以上의 事業者가 共同의 利益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체 또는 그 聯合体임.
- 事業者의 利益을 위한 行爲를 하는 任員, 從事員, 代理人, 其他의 者가 構成한 團體도 事業者團體로 봄.
- 事業者團體는 그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社團, 財團, 組合, 其他 契約에 의한 2以上의 事業者의 結合체임.
- 團體의 目的이 “共同의 利益을 增進” 하는데 있는 團體에 한함.
共同의 利益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活動에 限하지 않고 經濟活動上의 利益에 直接・間接으로 寄與함을 말하며 事業者個個의 具體的 利益은 물론 業界一般의 利益을 包含함.

- 團體의 目的은 그것이 定款・規約등에 明示된 目的에 拘碍받지 않고 實質的으로 判断함.

- 聯合會와 같은 事業者團體의 聯合体인 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은 構成組合뿐만 아니라 構成組合의 構成員도 包含함을 原則으로 함. 構成員의 範圍는 具體的 경우에 構成組合 으로 할 것인가 構成組合의 構成事業者에 擴大할 것인가는 組織의 原理와 法의 合目的性을 考慮하여 個別의으로 判断함.

나. 意 思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에는 競爭制限行爲를 意思가 必要함.
- 競爭制限의 意思는 事業者團體의 總會・理事會・幹部會議・分科委員會등을 통한 決議, 決定등을 事業者團體의 意思로 보며 積極的, 明示的인 意思의 表示뿐만 아니라 競爭制限行爲의 結果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情報의 提供, 論議등도 包含함.
- 定款・規定 또는 施行中인 事業計劃書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競爭制限行爲의 경우에는 定款・規定 또는 事業計劃書 自体를 意思로 볼 수 있음.
- 過去로부터 慣行으로 이루어지는 競爭制限行爲의 경우에는 이를 禁止하는 事業者團體의 明白한 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는 競爭制限

行爲를 위한 意思가 存在하는 것으로 봄.

다. 行 爲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는 事業者團體가 行하는 다음의 行爲를 말한다.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의 類型(法第18條 第1項)
 - (1)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類型：“共同行爲 類型”參照
 - *同行爲의 效力 및 認可節次등은 共同行爲의 경우를 準用(法第18條 第2項)
 - (2)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現在 또는 將來의 事業者數를 制限하는 行爲
 - 一定한 去來分野에 現在의 事業者數를 維持하고 現在의 事業者를 排除하여 그 수를 制限하고, 將來 新規事業者の 參加를 制限함으로써 結果的으로 市場에서의 競爭을 制限하는 行爲
 - 競爭制限行爲에 該當하는 行爲例
 - 一定한 去來分野에 新規事業者 參入 沮害
 - 既存事業者를 排除하여 事業者數를 制限
 - 事業者團體에의 不當한 加入制限
 - (3)構成事業者の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不當하게 行爲
 - 事業者團體가 構成事業者の 事業上의 設備, 制品, 價格, 技術, 數量, 去來方法, 營業方法 등의 事業活動에 관해 制限을 加하고,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沮害하는 것.
 - 이러한 制限이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共同行爲”에 該當되며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共同行爲에 該當함.
 -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類型中 가온 抽象的 · 包括的(補完規程, 競合規程)
 - 競爭制限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廣告活動의 制限
 - 營業日, 營業時間의 制限
 - 營業의 種類, 内容, 方法의 制限
 - 構成員間에 去來先侵犯 禁止
 - 店舗, 營業所의 新設, 移轉 制限
 - 原材料의 獨占購入, 配分
 - (4)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再販價格維持行

爲를 하게 하는 行爲

-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도록 事業者團體가 構成事業者 및 다른 事業者에게 強制하거나,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再販價格維持行爲를 하도록 함으로써 去來段階別로 市場價格을 制限함으로써 市場에서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制限하는 行爲
 - 不公正去來行爲: 法第15條 該當行爲
 - 再販行爲: 法第2條 第6項, 20條, 21條 該當行爲
- 行爲例
 - 構成事業者以外의 特定事業者와 去來치 않고 또는 去來치 않도록 事業者에게 要請
 - 事業者로 하여금 都賣價, 小賣價를 定하도록 하는 行爲

2. 事業者團體의 設立申請 및 事業計劃書 提出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를 效果的으로 감시하기 위해 事業者團體에 대해 그 設立申請 및 事業計劃書 提出義務가 賦課됨.

가. 設立申告

- 事業者團體는 그 設立事項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함(法第17條)
 - 申告事項이 變更되거나 團體解散의 경우에도 申告하여야 함.
- 申告期限: 設立日로부터 30日以内
- 申告內容: 名稱, 定款 및 事業內容, 事業者團體의 所在地, 代表者와 任員의 住所, 姓名, 設立年月日 및 設立根據, 構成事業者들의 數, 法人의 登記簿謄本 또는 主務官廳의 團體登錄證寫本(施行令第22條 第1項 第2項)

나. 事業計劃書 提出(施行令第22條 第4項)

- 提出期限: 每會計年度 開始後 2月以内
- 提出資料: 事業計劃書, 기타 事業內容에 관한 資料

III.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制裁

1. 制裁手段

가. 私法的 制裁

- 不當한 共同行爲의 私法的 效果 否認

- 不當한 共同行爲의 遂行을 約定하는 契約 등은 當事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함 (法 第11條 第2項)

○ 認可 받은 共同行爲의 경우는 有效

- 다만, 認可받지 않은 경우, 認可申請 하였 을 뿐인 경우, 認可 받은 事業과 다른 경우에는 無效

나. 民事上 損害의 賠償

-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不當한 共同行爲, 競爭制限行爲로 因해 被害를 입은者에 대해 損害賠償의 責任을 짐 (法 第45條 第1項)

○ 다만, 損害賠償請求權은 是正措置가 確定된 後가 아니면 裁判上 主張할 수 없으며請求權의 消滅時效는 1年임 (法 第46條)

* 損害賠償節次

違法行爲發生 → 是正措置 → 民事訴訟에 의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 → 損害賠償

다. 刑事法的 制裁

-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是正措置

-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를 한 事業者,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當該行爲의 中止 기타 是正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음 (法 第13條, 第19條)

○ 是正措置를 命하는 方式

- 是正命令
- 是正勸告 (法 第41條)
- 是正措置의 内容
- 當該 契約, 合意등의 破棄
- 該當行爲의 中止
- 謝過廣告 揭載
- 關聯者에게 書面通知
- 其他 是正을 위해 必要한 措置

- 共同行爲에 대한 課徵金 賦課

○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가 있는 경우 當該事業者에 대하여 共同行爲의 實行期間동안의 賣出額에 100分의 1을 곱한 金額의 範圍內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음 (法 第14條)

○ 課徵金은 是正措置와는 別個로 賦課할 수 있음.

다. 刑事法的 制裁

- 罰則限度

○ 不當한 共同行爲를 한 事業者 · 事業者團體 : 2年以下の 懲役 또는 1億원以下の 罰金 (法 第55條 第1項 第7號)

○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可能

○ 法 第18條 第1項 第2號 乃至 第45號의 行爲를 한 事業者團體 : 1年以下の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の 罰金 (法 第56條 第3號)

○ 是正措置에 不應한 경우 : 1年以下の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の 罰金 (法 第56條 第3號)

○ 設立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事業者團體등 : 5천만원 以下の 罰金

- 罰則賦課의 對象者

○ 原則의 으로 行爲者 (自然人)를 罰하는 外에

- 法人의 代表者
- 法人 · 個人의 代理人 · 使用人 · 기타 從業員

○ 當該 法人 또는 個人을 罰함 (法 第59條, 兩罰規定)

- 告發權

○ 共同行爲 또는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罰則의 賦與는 經濟企劃院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함.

○ 事業者團體의 設立未申告 및 虛偽申告등의 경우는 經濟企劃院長官의 告發이 없어도 論할 수 있음.